



제 429회 국회 (임시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특화사업자의 지역청년 고용노력 의무 신설〉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51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특화사업자의 지역청년 고용노력 의무 신설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주진우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5.
3. 회부연월일 : 2025. 9. 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구 운영이 지역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여 특구 활성화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 1. 특화사업자의 지역청년 고용노력 의무 신설

개정안은 특화사업자<sup>1)</sup>가 신규 인원을 고용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특화특구의 주변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청년(이하 “지역청년”이라 함)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매년 특화특구운영성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특화특구운영성과의 평가시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u>제20조의3(지역청년 고용 촉진)</u></p> <p>① 특화사업자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특화특구의 주변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p> |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현행 | 개정안                                                                                                                                                                                                                                                                                                                                                                                                                                  |
|----|--------------------------------------------------------------------------------------------------------------------------------------------------------------------------------------------------------------------------------------------------------------------------------------------------------------------------------------------------------------------------------------------------------------------------------------|
|    | <p><u>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지역청년”이라 한다)을 신규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고용비율과 적용 기준은 업종, 매출액,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u></p> <p><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u>④ 주변지역의 범위는 특화특구 주변지역의 학생 수, 특화사업자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함)는 지역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으로서 2025년 기준으로 136개 시군구에 172개 특화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총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현황

| 지역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세종 | 울산 | 경기  |
|--------|----|----|----|----|----|----|----|----|-----|
| 특구수(개) | 10 | 6  | 5  | 2  | 3  | 1  | 0  | 3  | 19  |
| 시군구    | 10 | 6  | 3  | 2  | 3  | 1  | 0  | 3  | 15  |
| 지역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특구수(개) | 13 | 16 | 16 | 13 | 29 | 21 | 13 | 2  | 172 |
| 시군구    | 10 | 10 | 11 | 11 | 20 | 18 | 11 | 2  | 136 |

주: 2025. 6.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2] 주요 규제특례 내용

| 구분          | 적용 특례            | 구분                | 적용 특례             |
|-------------|------------------|-------------------|-------------------|
| 일반<br>(62개)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 토지<br>이용<br>(54개)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             | 도로통행 제한          |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             |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                   | 농업진흥지역 해제         |
|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             | 도로점용 허용          |                   |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             |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 이양<br>(13개)       | 식품 표시기준 완화        |
|             |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은 특화사업자에 대한 지역청년 고용노력 의무 부과를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여 특화특구의 성과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민간 특화사업자에게 고용 관련 부담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규정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sup>2)</sup>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sup>3)</sup>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력 의무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특화사업자가 지역청년을 신규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 채용노력과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더욱이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입법례에 더하여 지역청년 고용실적을 운영성과 평가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화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와 연계<sup>4)</sup>되어 있어 사실상 지역청년 고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상 지역인재 채용의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일부에 국한하여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특화사업자에게 지역청년 고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

---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②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를 체계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경우 특구 지정 해제 등으로 특화사업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여 제도적 혜택이 없어져도 부과받은 법적 의무에 따라 채용한 인력을 영구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관련 규정이 이미 적용<sup>5)</sup>되고 있는데, 2025년 6월 기준 289개 특화사업자 중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비중이 70.0%(214개)로 민간기관의 비중이 높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지역청년 신규고용 노력의무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채용 자율성 제한이 민간 특화사업자의 특화사업 참여 및 특구 활성화를 저해하여 오히려 지역청년 일자리 감소 및 인구 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개정안에

---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467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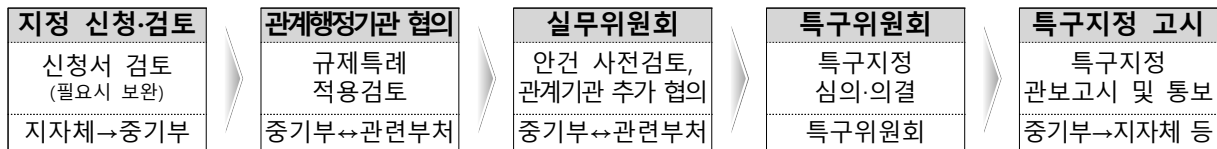
## □ 배경 및 절차

- (배경)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절차) 기초지자체(시·군·구)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지역특구 지정절차 >



## □ 규제특례 현황

- 「지역특구법」 상 총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

### < 주요 내용 >

| 구분          | 적용 특례            | 구분                | 적용 특례             |
|-------------|------------------|-------------------|-------------------|
| 일반<br>(62개)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 토지<br>이용<br>(54개)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             | 도로통행 제한          |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             |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                   | 농업진흥지역 해제         |
|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             | 도로점용 허용          |                   |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             |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 이양<br>(13개)       | 식품 표시기준 완화        |
|             |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 □ 지정 현황 : 현재 172개 특구\*(136개 시군구)가 지정·운영 중('25.9. 기준)

\* '04년 제도 도입 이후, 228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56개 특구가 해제·통합

### < 지역별 특구현황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 10 | 6  | 5  | 2  | 3  | 1  | 3  | 19 | 13 | 16 | 16 | 13 | 29 | 21 | 13 | 2  | 172 |